본 판결문은 판결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318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공사

피 고 1. ○○시장

2. ○○시장

3. ○○시장

4. ○○시장

5. ○○군수

6. ○○군수

변론종결 2014. 10. 14.

판결선고 2014. 11. 4.

주 문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시장이 2013. 9. 4. 한 재산세 25,744,380원의 부과처분 중 23,913,9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나. 피고 ○○시장이 2013. 9. 9. 한 재산세 4,739,250원의 부과처분 중 4,402,290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1

을 초과하는 부분,

다. 피고 ○○시장이 2013. 9. 10. 한 재산세 4,714,400원의 부과처분 중 4,379,210원

을 초과하는 부분,

라. 피고 ○○시장이 2013. 9. 10. 한 재산세 1,417,800원의 부과처분 중 1,317,000원

을 초과하는 부분,

마. 피고 ○○군수가 2013. 9. 10. 한 재산세 1,347,940원의 부과처분 중 1,252,130원

을 초과하는 부분,

바. 피고 ○○군수가 2013. 9. 9. 한 재산세 1,186,600원의 부과처분 중 1,102,240원

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3. 8. 18.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3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 6. 1. 현재 주요주주는 정부(26.86%), ○○공사(24.45%), 지방자치단체(○○시 3.99%, ○○도 1.22%, ○○광역시 0.70%, ○○광

대법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1

역시 0.66%, ○○도 0.59%, ○○광역시 0.42%, ○○도 0.40%, ○○광역시 0.38%, ○○광역시 0.33%, ○○도 0.31%, ○○북도 0.26%, ○○남도 0.19%, ○○도 0.05% 등 합계 9.48%) 등이 다.

나. 피고 ○○시장은 구 ○○시 시세 감면조례(2012. 6. 1. ○○도 ○○시 조례 제 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따라, 피고 ○○시장은 구 ○○시 시세 감면조례 (2012. 1. 11. ○○도 ○○시 조례 제884조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따라, 피고 ○○시장은 구 ○○시 시세 감면조례(2011. 12. 16. ○○도 ○○시 조례 제1626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피고 ○○군수는 구 ○○군 군세 감면조례(2012. 5. 11.○○도 ○○군 조례 제2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피고 ○○군수 는 구 ○○군 군세 감면조례(2012. 1. 6. ○○도 ○○군 조례 제2077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0조에 따라 원고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 세의 일정비율(민간출자분 비율을 제외한 부분)을 감면하여왔다.

다. 이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자 피고들은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2013. 6. 1. 현재 같은 법 제85조의2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관할 구역 소재 건축물에 대하여 감면 없이 주문 기재 각 재산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11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 2호증, 을라 제1호증, 을마 제1, 2호증, 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1

바 제1, 2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지방자치단체는 구 한국가스공사법(1986. 5. 12. 법률 제3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자본금 납입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주식의 거래가 자유롭고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며 각 주주는 지분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처분 중 처분 금액에 감면율 100분의 75와 지방자치단체 지분율인 9.48%를 곱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 참조).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는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이라는 제하에 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1

1, 2항에서는 각각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감면조항인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2013. 6. 4. 법률 제11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의 종류로 지방직영기업(제5조), 지방공사(제49조) 및 지방공단(제76조)을 규정하면서, 그 밖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자본금의 1/2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지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제77조의3)하고 있다.

한편 구 한국가스공사법 제4조는 원고의 자본금은 2천억 원으로 하고 위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1986. 10. 6. 대통령령 제11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 내지 5조는 원고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천만주로 하고, 1주의 금액은 1만 원으로 하며, 원고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만주 이상으로 하고, 주식의 발행시기·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서울특별시가 인수할 주식에 대하여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986. 10. 6. 개정된 구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1991. 7. 1. 대통령령 제13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지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1

자치단체가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와 주금의 납입액 ·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과 각각 협의를 거쳐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위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입법 취지 등과 함께,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는 지방공기업 등의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기존 조례에서 정한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법정화하면서 감면비율만 축소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인 점, ②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라고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2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의 주체가 되는 법인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2013. 6. 4.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비중이 1/10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경과규정에 의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어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13. 6. 1. 당시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④ 원고를 설립하기 위하여 구 한국가스공사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원고의 자본금은 2천억 원으로 하되 위 자본금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출자하도록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원고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⑤ 원고가 국가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출자받은 자본금으로 1983. 8. 18. 설립등기를 마치고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준비 중이던 1986년경 서울특별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장관회의 및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원고의 지분 3.12%를 취득한 것을 시작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원고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1

원고의 지분 9.48%를 보유하고 있는 점, ⑥ 당초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예정되어 있었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후 설립등기를 하였는지 그 전에 설립등기를 하였는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 여부에 차별을 둘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⑦ 관계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충족하도록 한 자본금을 충족하여 설립한 후 설립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을 받은 법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을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한 법인과 달리 규율할 필요성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 국민 편익을 위해 추진하는 법인 설립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이후로 미뤄야 한다면 이는 공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같이 설립 당시 예정된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1/2 미만을 출자·출연한 법인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입법 취지 등과 함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 2항은 지방세 감면대상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항은 지방세 감면대상을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문언상 원고가 같은 조 제3항을 적용받기 위하여 반드시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이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한국가스공사법 제18조 제3항은 원고에 대하여 이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1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③ 원고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되어 주식이 발행되고, 원고는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주주로 구성되며, 업무집행은 주주에 의하여 선임되는 이사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 상법상 주식회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 ④ 원고의 발행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 ○○군수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군수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을바 제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군수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정당한 세액

따라서 원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정당한 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처분금액의 100분의 75에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 6. 1.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인 9.48%를 곱한 금액(감면액)을 공제한 액수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아래 표의 정당한 세액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단위 : 원, 10원 미만 버림)

처분청	과세대상	처분액	감면액 (=처분액 × 0.75 × 9.48%)	정당한 세액 (=처분액 - 감면액)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1

○○시장	○○읍 ○○리 68-4 외 335건	25,744,380	1,830,420	23,913,960
○○시장	○○○읍 ○○리 1180외 43건	4,379,250	336,960	4,402,290
○○시장	○○동 41 외 43건	4,714,400	335,190	4,379,210
○○시장	○○동 산 2-1 1호 외 13건	1,417,800	100,800	1,317,000
○○군수	○○면 ○○리 216-2 외 20건	1,347,970	95,840	1,252,130
○○군수	○○면 ○○리 40-9 1동 4037호 외 16건	1,186,600	84,360	1,102,240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호

판사 정지은

판사 김종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1

관 계 법 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 지방공기업법(2013. 6. 4. 법률 제11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의3(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구 한국가스공사법(1982. 12. 31. 제정된 것)

제4조 (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1

■ 한국가스공사법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공사에 관하여 이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구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1986. 10. 6. 대통령령 제11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주식의 발행시기 및 주금의 납입액등)

② 서울특별시가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한다. 끝.